

양돈관련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의 종류와 이용방법



조 병 은 차장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정책자금으로 양돈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대출의 종류는 크게 농업종합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그리고 시설자금 위주의 축산발전기금이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통합하여 농가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축산경영자금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양돈농가의 농업종합자금 이용 현황을 보면 2005년 891억원, 2006년 1,248억원, '07년 6월말 현재 609억원으로 해마다 대출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미 FTA 체결 등 악화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시설현대화 또는 중·개축이 필요한 양돈농가에게 농업종합자금과 축산경영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농업종합자금

가. 농업종합자금이란

1) 정 의

농업인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

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농협이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후 시설·개보수·운전자금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자금이다.

분야별·용도별 지원사업을 묶어 농업인 중심의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금융기관 대출심사방식에 의한 대출지원체계 도입으로 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제도의 경과

'00년 원예특작 및 축산분야를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대출 실시하였으며 특히 '01년에는 기존의 축협에서 취급하던 축산전업경영자금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축산(양돈)농가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06년말까지 누계적으로 15만여건, 3조 9천여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축산분야는 43.2%, 원예특작분야 29.1%를 지원함. '07년에는 1조 26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5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품목별 농업종합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 分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건 수	대출액	구성비	건 수	대출액	구성비	건 수	대출액	구성비	
원예특작	7,211	1,482	17.8	8,254	1,735	18.2	3,271	678	13.1	
축 산	한우	4,241	1,369	17.0	5,488	1,792	18.7	2,330	738	14.2
	젖소	1,121	392	4.8	1,571	515	5.4	710	263	5.1
	양돈	1,506	891	11.0	2,211	1,248	13.0	942	609	11.8
	양계	273	114	1.4	573	225	2.4	232	98	1.9
	기타	542	173	2.1	533	108	1.1	233	77	1.5
	소계	7,683	2,939	36.3	10,376	3,888	40.6	4,447	1,785	34.5
기 타	24,480	3,812	45.9	20,809	3,941	41.2	14,734	2,716	52.5	
합 계	35,374	8,233	100.0	39,439	9,567	100.0	22,452	5,180	100.0	

나. 지원제도

1) 대상사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짐승, 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시설, 사육시설 및 장비 등으로 가) 기반시설은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을 말하며 나) 사육시설은 축사, 창고, 관리사,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장비 등을 말한다.

2) 용 도

가) 시설자금 : 생산·양돈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총사업비의 80%이내 지원

나)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비는 제외) 소요경영비의 100%를 지원

다)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

라) 농기계자금 : 축산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3)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 3.0%(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변동가능)

나) 대출기간 :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은 1년거치 4년 내지 7년 상환으로 농기계 내용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

다. 지원제외자

1) 양돈 등 해당 사업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농협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소득자는 연간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3)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5억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라. 신청방법

1)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정책자금

농·축협

2) 대출신청 : 연중 수시로 자금 필요시 신청 가능하며 각 대출취급사무소에 비취된 안내장 또는 직원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이용 등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아 신청

3)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대출제한 여부, 경영능력, 재무구조 등에 대한 평가 및 영농수익성 추정, 소요자금 산정, 신용·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여 자금을 지원

2. 축산경영자금

가. 축산경영자금이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양돈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농업종합 자금을, 비교적 규모가 적은 농가에 대하여는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함

나. 용도 : 사료구입비, 약품비 등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운영자금으로 지원

다. 지원금액 : 농가당 대출잔액기준 1,000만 원이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

라. 지원조건 : 1년 일시상환 (1년 연장가능)

마. 신청방법

1) 대출취급기관 :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

2) 대출신청 : 대체로 3월 초에 지역축협 단위로 자금이 배정되고 그 배정한도내에서 축산계 또는 영농회 단위로 신청자 및 신청금액을 접수

3)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 영농회 또는 축산계에서 신청·접수한 자료를 토대로 응자협의회(축협단위 심의기구)를 개최하고 신청자별 대출금액 및 대출대상자를 결정

4) 금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축산경영자금을 받지 않은 농가 또는 신청금액이 7백만원 이상인 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재해대책자금

농·축산농가가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소요되는 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1)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봉괴, 정전, 도난, 폐사 등)로 판정한 축산농가

2) 지원금액 : 피해두수에 대한 연간경영비의 50%이내에서 농가당 100만원이상 5,000만원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이내)

• 대출기간 : 1년이내(1년 연장가능)

3) 신청방법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축협을 거쳐 농협중앙회에 신청 **양통**